

【일반논문】

##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공동의 미래로서의 한반도 통일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사 청산 사례를 통한 함의

김지은 (연세대학교)

### 국문요약

분단으로 인한 공동체성 상실과 적대감, 아픔과 상처는 '분단 트라우마'로서 한반도에 서 세대를 이어 전이되고 있다.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에서 '과거사 청산'은 이야기되지 못했던 고통과 진실을 대면하고 공동체가 새로운 기억 및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 과정에서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통일은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통일에서 과거사 청산의 역할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의 우수 사례로서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그 함의를 살펴보고, 통일한국에서의 과거사 청산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국내외에서 과거사 청산 연구가 주로 사법적 처리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에 대한 통합적 논의는 아직 미진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사법적 처리 모델과 화해모델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단 트라우마와 사회치유, 화해, 통일의 맥락에서 과거사 청산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다는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주제어: 분단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 화해, 과거사 청산, 한반도, 통일

## I. 서론

식민지 경험과 한국전쟁, 분단이라는 굴곡진 20세기 한반도 역사는 많은 사회적 트라우마(Trauma)를 양산해냈다. 일제에 의한 지배는 민족에 대한 수탈과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와 같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외교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 남과 북의 이념대립과 동족살상은 남북 양측에 많은 인명피해와 함께 가족, 친지, 친구, 마을사람과 같이 가까운 사람들조차 불신하고 대치하도록 하는 공동체성의 붕괴를 가져왔다.<sup>1)</sup>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정치,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철저한 반공사상 주입이 이루어졌고, 정치 영역에서는 중북,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이 정치적 숙적 제거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반공은 남한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서 다른 논의들을 배제시키며 북한에 대한 사상적, 경제적 우위를 입증하기 위한 경제발전모델을 추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친일파 청산, 민주화, 다양성, 분배의 논리 등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장기간 독재정권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 되었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지주와 기독교인, 자본가 같은 계층들을 탄압하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경계하면서 ‘미제 승냥이’, ‘미 제국주의 앞잡이로서의 남한’을 배격하였다. 또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 수립 과정에서 유산계급에 대한 차별과 기회의 박탈, 전후 복구건설시기에는 한

1) 전우택, “통일은 치유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54권 4호 (2015), pp. 353-359.

국전쟁 당시 후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에 대한 행적조사, 불순세력 진압, 부역자 및 월남자에 대한 처단, 추방이 이루어졌다.<sup>2)</sup>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북한에서는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 마련과 반대파 숙청을 위한 명목으로 친일파 청산은 비교적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절한 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리와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포용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였다. 또, 김일성의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반대세력 숙청, 주민 생활 감시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3대에 걸친 독재체제 하에서의 인권유린 문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탄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많은 범죄행위들에 대한 과거사 청산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통일이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이 가지는 역할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분단 트라우마 치유와 화해에서 과거사 청산과 통일의 의미, III장에서는 과거사 청산의 이론적 배경, IV장과 V장에서는 각각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사 청산 사례, VI장에서는 합의를 논하고 VII장에서는 결론으로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 전우택 외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2018), pp. 200~202.

## II. 분단 트라우마 치유와 화해에서 과거사 청산, 통일의 의미

### 1. 분단 트라우마와 치유, 화해

트라우마 진단 및 정의의 역사는 19세기 유럽의 히스테리아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1차,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을 거쳐 발전하였다.<sup>3)</sup> 최근에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의학적 관점에서의 트라우마 개념에서 확장하여 사회적,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sup>4)</sup>

‘분단 트라우마’는 사회적 트라우마의 측면에서 분단이 남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과 사회·문화·정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상호적 연쇄작용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분단은 공동체적인 아픔과 상처,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즉, 모두가 함께 외상적 사건들을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그 외상으로 인한 증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북 상호간 적대감뿐만 아니라 남북한 내부에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폭력을 통한 외상의 악순환을 가져오며 피해자의 침묵을 강요하는 역할을 하였다.<sup>5)</sup> 이처럼 분단이 남북한에 가져온 트라우마와 그에 영향을 준 사회적

---

3) J. Herman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부터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플래닛, 2007), pp. 29-58; 홍준기, “폭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성찰: 개인과 사회 속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식의 지평』, 제18호 (2015), pp. 83~103.

4) 김지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 (2017), pp. 145-185.

5)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제52집 (2011), pp. 47~70.

조건들을 생각할 때,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분단의 역사가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양산했고, 그 구분조차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한반도에서는 가해자이자 피해자로서 자신들에 대한 인식과 치유, 공감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상호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sup>6)</sup>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과 그로 인해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인정, 새로운 의미부여, 가해자에 대한 공감을 통해 일어나는 내적인 과정이라면, 화해는 용서 이후에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상호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sup>7)</sup> 그런 의미에서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는 남한과 북한 내부, 나아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의 용서와 화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 2.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통일의 관계

과거사 청산은 ‘과거를 다시 기억하는 작업’으로서 억압된 기억을 회복하고 침묵, 망각, 은폐의 대상이었던 과거 기억을 복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8)</sup> 과거사 청산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개인과 공동체에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존재하며, 세상은 신뢰할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야기될 수 없었던 진실과 피해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인정과 보상,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 등이 시작되는 첫걸음에 바로 과거사 청산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함으로써 사회 신뢰도를 높이는

6) 손운산,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p. 259.

7) 위의 책; 김지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pp. 149~150 참조.

8)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2005), p. 28.

데 기여한다. 나아가 과거사 청산이 보다 이상적인 수준, 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용서와 화해까지 진행될 수 있다면 개인적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치유의 효과까지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분단 트라우마에 대한 사회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통일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온전한 통일일 수 없으며, 통일이 없는 분단 트라우마 치유와 과거사 청산 역시 부분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남갈등, 남북갈등의 당사자 및 피해자, 남한과 북한 내에서 역사의 소수자로서 희생되었던 사람들과 현재에도 국가에 의한 범죄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분단체제<sup>9)</sup>가 지속되는 한 이 같은 현실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현재 남북이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트라우마와 과거사 청산에서의 한계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결국 분단 트라우마와 그에 대한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통일은 모두 하나의 연결된 고리로서 볼 수 있다. 과거사 청산과 분단 극복을 통한 치유와 화해,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통한 통일에의 도달, 통일을 통한 과거사 청산에서의 한계 극복 및 치유와 화해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

9) 백낙청(1998)은 분단을 하나의 체제로 보아야 하며, 분단이 어떤 측면에서는 남한과 북한에서 체제 정당성과 기득권 이익 유지를 위한 상호호혜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분단체제의 극복은 궁극적으로는 상위 시스템인 세계체제의 변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해, 과거사 청산, 통일은 한반도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공동의 기억을 만들어 내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만드는<sup>10)</sup>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Ⅲ. 과거사 청산의 이론적 배경

국내외적으로 과거사 청산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나<sup>11)</sup>, 국내에서의 과거사 연구는 주로 일제 강점하의 친일행위와 강제동원 규명, 해방 후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희생과 주민 간 갈등의 실상 규명 및 보상과 화해 주선,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행위 조사와 피해자 보상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 추진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어왔다.<sup>12)</sup>

과거사 청산의 정확한 용어는 학자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sup>13)</sup> 포함 범위 역시 조금씩 다르다. 전진성(2003)은 과거청산이 과거와의 대면을 일정한 선에서 종결시킴으로써 비판적 문제제기와 희생자에 대한 추모 정신을 저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대안으로서 ‘과거 극복’을 제안하였다.<sup>14)</sup> 그는 1960년

10) 엄찬호(2012)는 “과거사 청산의 궁극적 목적은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 발전적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제33권 (2012), pp. 263~290.

11)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 15.

12)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p. 265.

13)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 15.

14)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과거극복”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제9호 (2003), pp. 133~191.

대 서독에서 시작된 과거극복 개념의 시대별 흐름에 대해 기술하면서 과거에 대한 ‘비판적 거리두기’와 ‘기억의 내재화’를 통한 ‘애도’로서 과거극복을 해석하였다.<sup>15)</sup> 한편 안병직(2005)은 과거사 청산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sup>16)</sup> 첫 번째는 과거 규명으로, 과거사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상과 복권, 명예 회복 등을 포함하는 사법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이다. 두 번째는 과거성찰로, 과거사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역사의 식과 역사인식, 가치와 윤리, 문학과 예술, 기념일, 기념물과 같은 공식, 비공식적 기억과 기념 문화의 문제까지 포함된다. 그는 과거성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과거사에 직접 연루된 당사자 개인이나 일부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나 사회 구성원 전부, 나아가 후속세대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엄찬호(2012)는 과거청산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 의도적, 체계적으로 행해진 중대한 인권침해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관련된 억압기구의 해체와 민주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였다.<sup>17)</sup> 이는 안병직(2005)이 정의한 과거사 청산의 두 가지 측면 중 과거 규명에 보다 가까운 논점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률과 최성진(2015)은 20세기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진행되었던 불법을 청산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sup>18)</sup> 첫 번째는 화해모델로, 과거의 불법을 논하기보다 책임자를 용서하는 것이 국민적 화합을 가져온다고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는 형법에 의한 철

15) 이진모, “독일의 ‘과거’와 한국의 현실 사이의 진지한 대화,” 『역사학보』, 제187권 (2005), pp. 271~291,에서 재인용.

16)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p. 14~15.

17)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pp. 264~265.

18) 김동률 · 최성진,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제66권 (2015), pp. 449~481.



저한 사법적 청산으로, 역사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이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사 청산은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을 강조하는 사법적 영역과, 처벌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복원, 기억의 내재화와 애도, 용서 등을 강조하는 성찰 및 화해의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거사 청산의 이러한 개념들은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도 맞물려 있다. 사법적 처리를 강조하는 입장은 징벌적 정의와, 화해를 강조하는 입장은 회복적 정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sup>19)</sup>

본 연구에서는 과거사 청산을 사법적 영역과 화해의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법적 처리와 화해모델의 우수 사례로서 각각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과거사 청산을 살펴볼 것이다. 물론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연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9)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는 이행기 정의, 국제 정의론, 범죄 정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제어(Zehr, 1997)는 범죄 정의(Criminal Justice)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징벌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개념을 비교하였다. 그는 징벌적 정의가 법을 어기는 행위로서의 범죄, 국가에 대한 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가해자에 대한 비난과 죄책감 부여, 고통을 유발하는 것(처벌)이라면 회복적 정의는 사람과 관계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범죄를 규명하며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공동체에 입힌 손상 및 그 결과에 대해 깨달음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가해자, 피해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소통, 협력, 대화하며 회복을 가져오는 데 그 방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점에서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적인 징벌적 정의의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피해자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실제로 피해자,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 회복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Howard Zehr, "Restorative Justice: The Concept," *Corrections Today*, vol. 59, no. 7 (December 1997), pp. 68-70; 김지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pp. 150-152 참조.

아울러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를 통한 합의 발견에 있으므로 사례에 대한 자세한 리뷰보다는 합의를 위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과거사 청산 연구가 주로 사법적 청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는 점, 사법적 청산과 화해모델에 대한 통합적 논의가 아직 미진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통일이라는 맥락에서 과거사 청산을 바라본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차별점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과거사 청산이 통일한국에서 과거에 대한 합의된 기억의 공유, 불법적 과거에 대한 적합한 처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의 지향,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V. 독일의 과거사 청산 사례<sup>20)</sup>

### 1. 통일 전 과거사 청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나치에 대한 과거사 청산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은 사법적 처리를 위주로 이루어졌다. 뉘른베르크 재판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륜 범죄를 규정하고 전쟁 범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써 국제법 발전에 공헌하고, 독일에서 나치 재발을 막는 교육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sup>21)</sup> 그러나 독일인들

20)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내용은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p. 42~77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각주로 표기하였다.

21) 위의 책.

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연합군에 의하여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독일인들에게 전쟁 패배로 인한 대가로 인식되면서 ‘승자의 재판’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즉, 전쟁 기간 동안 연합국이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나치의 죄목만을 묻는 것 같은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이 전범을 ‘희생양’으로 인식하고 옹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나치에 대한 인적·제도적 청산은 서독보다 동독에서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 과거사 청산이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참회보다는 공산당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 즉, 나치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주아와 엘리트들을 숙청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산주의자들은 과거 나치 독일이 그들에게 가했던 폭력을 강조하였다.<sup>22)</sup> 또, 나치 유지의 원인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 내면적인 성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동독에서는 전후 초기를 제외한 시기에는 과거사 청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에 대한 명확한 비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독재 체제가 지속되었다.

서독에서 탈나치화를 위한 노력은 1952년까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불신으로 1948년경 사실상 중단되었다.<sup>23)</sup> 서독에서는 전후 경제건설과 민주주의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나치의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미래의 청사진 제시에 주력하였다. 이에 과거 나치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국가 발전을 위한 필요 인력으로서 다시 공직에 복권하거나 사회에 진입할 수 있었다. 특히 1949년의 ‘연방

<sup>22)</sup> Jennifer Lind, “The Perils of Apology: What Japan Shouldn’t Learn From Germany,” *Foreign Affairs*, vol. 88, no. 3 (May/June 2009), pp. 132~146.

<sup>23)</sup>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 52.

사면법'과 1954년의 제 2차 사면법은 이들이 당당하게 복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서독에서는 과거에 대한 애도나 기억보다는 잊거나 침묵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흐름이었다.<sup>24)</sup>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거사 인식에 대하여 국민적 통합과 미래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며, 언제까지 과거에 매여 있기만 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었다.<sup>25)</sup>

그러나 서독 정부 차원에서 독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피해자들에게도 보상하고, 극우정당의 활동 금지와 같이 나치즘 부활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아데나워(Adenauer) 총리는 1953년 독일연방보상법을 제정하여 나치 범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가동하도록 했으며, 1956년 연방보상법에서는 대상을 법인과 예술가 및 학자, 희생 피해자 가족, 피해자를 도운 사람이나 오인되어 피해받은 사람들까지

24) 독일에서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린드(Jennifer Lind)는 1950년대 서독에서 아데나워(Adenauer)의 보수적 기독교 민주정당 집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에 대하여 평가하면서 이 시기 서독이 2차 세계대전 시기의 전쟁공격과 잔학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홀로코스트 생존 유대인들에게 도덕적,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였지만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속죄' 모델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비록 과거사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교과서에서는 근대사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으며, 전쟁에 대한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고, 홀로코스트에 독일 군대의 책임이 있었으나 모든 군인들이 관여한 것이 아닌 나치 친위대원(SS)만이 참여한 것으로 묘사되었다. 교과서에서의 주된 서술은 독일이 겪었던 고통, 즉,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이 겪은 민족적 말살, 전쟁 시기 독일인 수감자들이 소련 강제수용소에서 당했던 처우, 소련 침공의 잔학성 등에 대한 것이었다. Lind, "The Perils of Apology," pp. 138-139.

25) 1975년 헬무트 슈미츠(Helmut Schmidt) 총리는 "살아있는 대부분의 독일인들과 히틀러 이후 세대들은 나치의 범죄에 대해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프란츠 요세프 스트라우스(Franz Josef Strauss)는 "독일은 이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위대해져야 한다.", 보수 정치인인 알프레드 드러거(Alfred Dregger)는 "히틀러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사를 인정하고 진정한 참회와 반성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Ibid., p. 140.

확대하였다.<sup>26)</sup> 또, 1960년대 이후 과거사 청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미진한 부분을 바로 잡고, 과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실제로 서독에서는 1960년대 홀로코스트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독일인들이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책임자들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에는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진행했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sup>27)</sup> 나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젊은 세대의 등장, 시민사회의 성숙, 미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홀로코스트》의 영향이 자리 잡고 있었다.<sup>28)</sup>

## 2. 통일 이후의 과거사 청산

통일 이후 독일에서는 과거사 청산 문제가 다시 주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것은 주로 동독 정부에 의한 불법적 행위들에 대한 것이었고, 전후 나치에 대한 처리에서 그러했듯 사법적 정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사 청산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구동독 정권 하에서의 인권유린과 국경수비대에 의한 총살, 구동독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통일 이전 이미 서독시절부터 존재했던 ‘중앙법무기록보관소’에 의해 동독에 의한 범죄 기록도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오고 있었다.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관소는 동독의 불법적 행위를 경계하고 억

26)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 제12호 (2015), pp. 26~49.

27) 사회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홀로코스트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세계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까지 보상 정책을 확대하고 강제수용소 및 관련 장소들을 보존하고 기념하였으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 제정, 박물관 건립을 진행하는 한편,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전쟁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독려했다. Lind, “The Perils of Apology,” p. 139.

28)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p. 60~64.

제하는 것으로서 예방적이고 교육적인 효과를 가졌다.<sup>29)</sup> 이를 비롯하여 통일 독일에서는 전범 기소, 조사위원회 및 슈타지 문서보관청의 설립 등을 통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사법적 청산에서의 한계도 분명 있었는데, 예를 들면 통일 이후 동서독 통합, 소련을 비롯한 주변국 개입, 동독 국내법 인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른 논란, 고령인 전범자들의 건강문제, 국외 피신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에서의 제약이 그것이었다.<sup>30)</sup>

이에 따라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가 공존한다. 전자에서는 사회통합을 위한 용서와 관용 없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경우 동독과 통일을 위한 협상이 어려웠을 것<sup>31)</sup>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후자에서는 구동독에서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독체제의 희생자들은 미진한 사법적 처리에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sup>32)</sup> 실제로 통일 이후 독일에는 형법의 역할에 대하여 많은 회의론이 존재하였는데, 이는

29) 해당 보관소의 존재가 알려지자 구동독 공산당 서기장이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관소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형법에 의한 과거청산이 가지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김동률·최성진,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p. 459.

30) 이성우, “독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의 정치적 제약사항 검토,”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139~171.

31)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사민당 원내총무(현 한독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인터뷰,” 『아산정책연구원』(온라인), 2014년 10월 14일; (<<https://goo.gl/Vw6vnp>>).

32) 독재의 범죄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결과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적은 수의 사법 처리 결과를 가지고 동독 체제를 옹호했던 자들은 동독에는 범죄도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동독 체제의 희생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였다. 배르벨 볼라이는 커다란 실망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우리가 원한 것은 정의였는데, 얻은 것은 법치 국가였다.’ Anna Kaminsky, “과거청산을 통한 통합,” 『내적통합: 독일과 한국의 공동 도전과제』, 한독 국제회의 (2013년 5월 20일).

체제범죄자들 중 극히 일부만이 형사소추되었으며 주요 범죄자 위주로만 진행된 표본식 형사소추로는 근본적인 과거청산이 어렵다는 것이었다.<sup>33)</sup>

또 다른 비판은 ‘승자의 사법’에 관한 것으로서, 주권 국가로서 동독의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화되던 행위들을 체제 붕괴 후 새로운 법질서 속에서 불법으로 정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관점이다.<sup>34)</sup>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이 논리는 과거 체제의 불법행위자들이 가해자-희생자의 위치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비난을 피해가려는 노력이라고 주장하였다.<sup>35)</sup>

이와는 별개로 사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는데, 이 시각에서는 승자의 사법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동독 체제를 불법적인 것으로 규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새로운 법 기준을 가지고 동독의 법체계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적절성, 정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형사소추를 사면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1990년 통일 이후에도 지속된 많은 진통들로 인하여 사법적 처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사법적 처리의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가해자들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처벌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에서는 ‘사통당(독일사회주의통일당: SED) 독재의 역사 및 결과 청산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운영하였

33) 김동률 · 최성진,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p. 451.

34) Günther Jakobs,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Strafrecht? - Zur Leistungsfähigkeit des Strafrechts nach einem politischen Umbruch,” in Josef Isensee, ed., *Vergangenheitsbewältigung durch Recht* (Berlin: Duncker & Humblot, 1992), p. 56; 위의 논문에서재인용; 승자의 사법과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장원석,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정치와 평론』, 제14권 0호 (2014), pp. 89~119 참조.

35) Katja Schweizer, “Möglichkeiten und Schwierigkeiten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der Vergangenheitsbewältigung” in Lothar Mertens & Voigt Dieter, ed., *Opfer und Täter im SED Staat* (Berlin: Duncker & Humblot, 1998), p. 15; 위의 논문에서재인용.

다. 이 위원회는 사법적 처리가 아닌 대화를 통한 과거 역사의 이야기, 재경험, 이해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는 진상규명을 통한 반전체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 유도, 피해자 보상조치 마련, 서독인들의 동독에 대한 이해 향상을 가져왔다.<sup>36)</sup> 또한 동독에 대한 과거사 청산과 함께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2차 세계대전 시기 외국인 강제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진행되었다.<sup>37)</sup> 보상을 진행하는 ‘기억·책임·미래’ 재단에서는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기억과 미래’라는 기금을 별도로 구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 이해,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sup>38)</sup> 더불어 문화, 예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록, 애도, 공동의 기억 마련을 위한 시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서도 한계는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동독 체제에 의한 희생자 보상은 나치 희생자 보상에 비하여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였으며,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붕괴 이후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냉전체제의 산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었다.<sup>39)</sup> 이는 나치 희생자와

<sup>36)</sup> Werner Weidenfeld & Karl-Rudolf Korte, eds.,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49-1989-1999*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1999) pp. 330~342; 최승완, “동독 사회주의 독재청산의 현황과 과제,”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 관련분야』 (서울: 통일부, 2014), pp. 72~73.에서 재인용.

<sup>37)</sup> 1956년의 연방보상법에서는 강제수용소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 강제 노동자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와 야당인 녹색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1999년 12월 강제 노동에 동원되었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협정이 체결되고 2000년 7월 관련 7개국이 국제보상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기업·책임·미래’ 재단이 설립되었다.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pp. 46~47.

<sup>38)</sup> 위의 논문; 장공자,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통일전략』, 제11권 1호 (2011), pp. 121~151.

<sup>39)</sup> Constantin Goschler,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Challenge of Transitional Justice,” in Buhm-Suk Baek, Ruti G. Teitel, ed.,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pp. 128~129.



동독체제 희생자 보상 사이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다.

## V.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과거사 청산 사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sup>40)</sup>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1995년 진실과 화해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가 설립되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그 목표가 화해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점에서 과거사 청산에서의 화해모델에 속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며,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sup>41)</sup> 위원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화, 공동체 형성, 정치적 변화의 공고화(Cleansing of individuals, Community-building, Consolidation of political change, '3C')를 추구하고, 정치·사회적 차원에서 변화를 강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sup>42)</sup>

위원회의 주된 활동은 인종분리정책 기간 동안 자행된 인권침해 사례

40) 1948년 집권한 국민당(National Party, NP)에 의한 흑인 및 유색인종 차별정책으로, 거주지 분리를 비롯하여 흑인 및 유색인종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백인과 철저히 구분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41)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국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광주문제의 해법을 연구한 안종철(2002), TRC와 개혁적 사회통합에 관한 김영수(2009), 우분투와 TRC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화해에 대해 연구한 김광수(2018) 연구, 해외에서는 TRC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적 정의에 기여한 측면에 대한 Llewelly and Howse(1999), TRC에서의 사면에 대하여 남아공 국민들이 인식하는 심리적 정의(Psychological Justice)에 대한 Gibson(2002; 2006)의 연구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회복적 정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으며,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화해모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42) 이재승, 『국가범죄』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0), p. 33.

에 대해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해자에 초점을 맞추고 처벌을 통한 정의의 구현을 추구하는 재판에 비해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들을 규명하고 사건이 일어난 맥락에 집중하면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인다.

일반적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해 운영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형법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가깝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경우 진실규명에 더해 사면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형법적 기능의 일부를 함께 수행했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2003년까지 운영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인권침해위원회, 보상 및 명예회복위원회, 사면위원회로 구성되었으며, 사면위원회에 의해 사면이 결정된 개인은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로부터 면죄될 수 있었다.<sup>43)</sup>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총 2만 2천명이 진술하였으며, 이 중 6천 명이 사면을 청구했다.<sup>44)</sup>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밝혀진 진실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는 진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도록 하였다. 또한 사법적 처리에서의 소요 시간과 비용 대비 실제 법적인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 때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황에서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최소한 묻힐 수 있는 진실을 밝히는 데 보다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sup>45)</sup>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에 참여했던 존크 마조비나(Zonke Majovina)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43)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uthafrica-embassy.or.kr/kr/aboutsa/overview\\_5\\_2.php](http://southafrica-embassy.or.kr/kr/aboutsa/overview_5_2.php)).

44) 위의 홈페이지.

45)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p. 166~167.

사람들로 하여금 지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한 시대를 마감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원회의 성과는 좋은 편이었고,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희생자들은 공개적 발언을 통해 몇 번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한계점으로는 위원회가 짧은 시간동안 진행된 점,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례 중 일부만 다룰 수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다.<sup>46)</sup> 특히 아파르트헤이트의 대표적인 악법인 강제이주와 성폭력, 여성피해를 조사 범주에서 누락함으로써 많은 피해자들에게 진실을 규명할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sup>47)</sup> 또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가졌던 사면권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화해를 위하여 사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회복적 정의 구현을 위해 징벌적 정의가 희생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sup>48)</sup>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우분투’<sup>49)</sup>가 핵심적인 가치로서 용서와 화해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지만,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고자 하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지배를 합법화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sup>50)</sup> 또한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하

46) “진실과 화해위, 한 시대 마감하고 미래로 가는 길,” 『오마이뉴스』(온라인), 2004년 9월 1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008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0089)).

47) P. Hayner 지, 주혜경 역,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서울: 역사비평사, 2008), pp. 141~150.

48)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징벌적, 회복적 정의 구현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David Dyzenhaus, “Debating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vol. 49, no. 3 (Summer 1999), pp. 311~314 참조.

49)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한 사람이다”라는 아프리카 세계관으로, 공동체성,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상호 의존성,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파주: 도서출판 동녘, 2017), p. 139; 손운산, 『용서와 치료』, pp. 174~175.

50)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pp. 140~141.

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재경험하고 혼자 남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위험도 있었다.<sup>51)</sup>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같은 사법적 처리 기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지는 않았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사면을 통하여 사법적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백인과 흑인 간의 갈등이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백인들이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에 참여하도록 하고 갈등을 봉합한다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진실과 화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지였을 수 있다. 그러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 시기 이것이 새로운 과거사 청산 모델로서 세계적인 호평을 받았던 것과 달리 위원회 활동 종료 후 사면을 신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처리의 부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소수의 흑인들만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그 의미를 퇴색시킨 측면이 있다.<sup>52)</sup>

---

51)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의 2차 외상 및 부정적 정서, 트라우마 재경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 Hayner,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pp. 256~267; Carlos Martín-Beristain, Darío Páez, Bernard Rimé and Patrick Kanyangara, “Psychosoci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Rituals of Transitional Justice,” *Revista de Psicología Social*, vol. 25, no. 1 (2010), pp. 47~60 참조.

52) 김한균 외 공저, 『통일시대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6), p. 612.

## Ⅵ. 독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통한 합의

### 1. 독일 사례를 통한 합의

#### 1) 승자의 사법에 관한 부분

독일의 사례는 통일을 경험한 국가로서 다른 해외 사례들보다 더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동독 내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들에 대한 법적 처벌과 관련된 논란들은 통일 이후 북한 지도층에 대한 처벌, 북한국내법에 대한 인정 범위와 같은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준비와 합의가 이루어져야함을 보여준다.

전후 연합군에 의한 나치 과거사 청산, 통일 후 서독에 의한 동독 정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청산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서서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완전히 불법적인 체제 혹은 국가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독일의 과거사 청산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독일에서 ‘승자의 사법’이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 역시 통일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통일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고,<sup>53)</sup> 이에 따라 사법적 처리에서의

<sup>53)</sup>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는 급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를 가정하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며 붕괴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적으며 남북한 간의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A Reunified Theory”에서 Terry는 전자를, Delury와 Moon은 후자를 주장하며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John Delury, Chung-in Moon, and Sue Mi Terry, “A Reunified Theory: Should We Welcom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Foreign Affairs*, vol. 93, no. 6 (November/December, 2014), pp. 179-183 참조; 이수훈(2011)은 노무현 정권 후기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에 걸쳐 등장했던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를 가정하는 ‘제 2판 급변사태론’에 대한 오류를 비판하며 장기간에 걸친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을 토대로 하는 ‘포용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수훈, “‘제2판’

대상과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 중심의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체제에 대하여 일방적인 평가와 처벌 위주로 과거사 청산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일반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공개처형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가 발생해온 북한의 상황에서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처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남한에서도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과거사 문제들, 정부에 의한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한 과거사 청산을 희석시키거나 마치 남한에는 아무런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처럼 여기도록 하는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 또한 통일 이후의 과거사 청산에 대한 남한에서의 국내적 논의들은 대부분 남한의 법을 북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의 법을 동독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동독 지역 사람들의 반발과 반감이 있었고, 모든 사회제도에서의 서독 방식 주입은 동독 지역에서 구동독에 대한 향수를 의미하는 오스텔지어(Ostalgie)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남한의 법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동독 지역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이 진행될 경우 남북 각각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인권보호나 기본적인 국민주권, 자연권 등을 침해하는 일부 악법에 대한 개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 정치에서의 제도적 통합과 함께 사법적 영역에서도 남북 간의 이질성을 줄여나가고 궁극적으로 법체계의 유사성

---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4호 (2011), pp. 1~30.

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sup>54)</sup> 이 경우 단기간 내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국가범죄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 교류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권문제 해결이 중요함을 설득하고, 내부 지도부 인식 변화, 인권탄압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공동의 합의와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남한 역시 과거사 청산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에게 물질적 보상과 함께 기념사업, 명예회복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보상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통일의 과정과 형태에 관하여는 연합제, 연방제를 비롯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사례를 통일 한국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으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과거사 청산에서의 방향과 방법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독일과 달리 남북 간에는 직접적인 전쟁의 경험과 60여년이 넘는 정전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처리에 있어서도 독일과는 다르게 고려해야 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기억하여야 할 것은 승자의 사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54) 모춘홍·정병화(2018)는 남북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법적 영역에서의 한시적 분리운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 이후의 과도기적 법제 운영과 관련하여 과거사 청산의 영역이 아닌 재산권, 노동력의 이주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모춘홍·정병화,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소고(小考),” 『한양법학』, 제29권 1호 (2018), pp. 367~383.

## 2) 과거사 청산에서의 자발성과 지속성

독일의 사례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과거사 청산에서의 자발성과 내적 성찰, 지속성이다. 전후 나치 청산 작업에 대한 독일인들의 부정적 인식은 외부 압력에 의해 동기화된 과거사 청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서독에서는 나치 시기 집권자들의 재복권, 동독에서는 과거사에 대한 성찰 없는, 공산당의 기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과거사 청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과 과거의 의미, 교훈에 대한 국민적인 자각과 공동체적 논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과거사 청산은 진정성을 잃거나 일회적인 것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의 과거사 청산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단순한 사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 성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서독에서 그러했듯 과거사 청산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역사는 그 당시 상황적 맥락에 의해 해석되기도 하지만, 현재와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변화하는 시대상과 시대정신에 의하여 그 해석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과거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절대 불변하는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도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거나, 한 번의 평가로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양해야한다. 주기적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다양한 해석의 공존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강한 사회적 담론의 장이 마련될 때, 통일 한국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범적 과거청산의 사례로서 통일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은 독일로부터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3) 시민사회 및 정당의 노력

나치에 의한 외국인 강제노동자 보상, 동독 독재정권 가해자들의 사법적 처벌에 대한 정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는 실질적인 보상법 및 재단출연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다양한 정당과 시민사회가 중요한 주체로서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관이나 제도를 통한 과거사 청산은 정의 실현을 위한 근간이 되지만, 언제나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공백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다양한 정당들의 견제와 감시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계,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진 과거사 청산 노력은 과거사 청산이 사법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각계의 공동체적 인식과 실행,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4) 피해자 보상에서의 형평성

나치 희생자 내에서도 독일점령군 지역에서의 희생자였는지 외국인 강제노동자였는지에 따른 보상 차이, 나치체제와 동독체제 희생자간의 보상에서의 불공평성은 과거사 청산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 혹은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불거질 수 있는 희생자 보상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보게끔 한다. 더불어 과거 어느 시기, 희생자의 범주에 누구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과거사 청산을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은 희생자들 간의 분열, 사회적 분열, 상대적 박탈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하면서 보상이 희생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거나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한국전쟁, 분단 후 남한과 북한 내부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희생자들과 같이 다양한 시대 및 층위의 희생자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의 시점과

희생자에 대한 기준, 그것을 정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통일 한국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 중 어느 한쪽만이 아닌 모두가 납득할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다.

##### 5) 사법적 처리와 화해모델의 조화

사법적 처리에서의 공과 실과는 별개로, 사법적 처리만으로 진정한 과거사 청산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사법적 처리는 과거 청산과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의무를 가지는 국가적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를 볼 때 가해자 및 범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요구를 국가기관이 충분히 만족시키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사법적 처리의 한계를 보충하고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기념, 배·보상, 국가기관 쇄신 등을 병행한다. 특히 진실위원회, 조사위원회 등을 통한 회복적 정의의 추구는 피해자들의 진실에 대한 요구, 이야기할 권리라는 측면과 사법적 영역을 통해 모두 해소할 수 없는 징벌적 정의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효과를 가진다.<sup>55)</sup> 이 같은 점으로 인하여 독일에서도 진상조사위원회 및 기억·책임·미래 재단이 운영되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구들이 설립되었다.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치유와 처벌이라는 서로 모순된 듯 보이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시킬 것인가는 통일 과정에서의 중요

<sup>55)</sup> 진실과 화해위원회 활동은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규명과 함께 활동 내용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후의 정책적 제안과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는 범죄행위를 한 진실을 밝히는 대가로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라는 점에서 사법적인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한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는 통독에서 사법적 처벌보다 사면과 화해를 주장했던 학자들과 이에 반대했던 학자들 사이의 대립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사법적 처벌을 넘어서서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물질적, 도덕적 보상과 공식적인 감사 표시, 행사, 기록, 박물관, 교육 등을 통한 의식 고양에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sup>56)</sup> 마찬가지로 통일 과정에서도 사법적 처리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공동적 역사인식 함양, 적절한 방식의 보상, 지속적인 기억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 2.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통한 함의

### 1) 진실규명을 통한 화해 및 사회구조의 개선

과거사 청산 문제에 있어서 가해자들의 가감 없는 진술을 위한 장치로서 사면과 사회통합을 위한 용서와 화해, 과거를 바로잡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의 사회갈등은 진정한 사회치유를 위해서는 과거사 규명과 함께 제도적, 사회경제적 보상과 재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함을 반증한다.

그러나 비록 완벽한 형태는 아닐지라도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해 오랜 기간 다뤄질 수 없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다시금 주목받고, TV 방송을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공유되며,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고백함으로써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정치권력에 의해 감추어졌던 범죄사실이 사회적으로 공표된다는 것은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직접적 응징과 달리 사

<sup>56)</sup> Anna Kaminsky, “과거청산을 통한 통합,” p. 6.

회적 공론에 의한 응보적 심판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sup>57)</sup>

깁슨(Gibson 2004)은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실규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sup>58)</sup> 그의 연구에서는 과거를 인정하고 공통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갖는 것이 백인, 유색인종, 인도출신 아시아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람들에게는 화해와 수용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상관성이 있었으나 흑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는 인종별로 위원회의 활동이 가지는 영향은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진실규명이 화해와 상호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과거 트라우마를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가 되지는 않으며, 진실을 통한 공동의 과거가 인종들 간의 수용과 신뢰 형성, 화해에 어떤 방식으로든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흑인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은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의 활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 사례는 통일 이후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남북 양측 정부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 한국 전쟁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사법적 처리(징벌적 정의)와 화해모델(회복적 정의) 사이에서 어떻게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제공한다. 새로운 국가적, 공동체적 정체성 마련 및 사회통합을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용서가 이루어져야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

57) 이영재,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 『정신문화연구』, 제 38권 4호 (2015), pp. 121~152.

58) James L. Gibson,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April 2004), pp. 201~217.

해자들의 동의와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사회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모순적인 사회구조의 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재판을 통해 모두 다루어지기 어려운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한 도구로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과 화해위원회와 같은 기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2) 상호존중 및 불안전성에 대한 인정

또 다른 시사점 중 하나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사면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했던 백인들을 ‘악’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그들의 불안전함을 인정하고, 용서받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본 것이다.<sup>59)</sup>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전성에 입각하여 그들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절대 우위에 서서 일방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백인들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위원회의 태도에서도 나타나며,<sup>60)</sup> 남북의 통일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인간성까지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층적 변혁을 위한 가능성을 제시한다.<sup>61)</sup> 북한정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악’으로 규정짓고 마녀사냥을 통해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거나, ‘그들은 완전히 틀렸고, 우리는 완전히 옳다.’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통일된 사회로서 남북한이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

59) 전우택 외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pp. 59-60.

60) 위의 책, pp. 67-71.

61)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p. 144.

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서는 지양해야겠지만,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원인과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고 단순한 처벌만이 아닌,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3) 과거사 청산에서의 내부적, 자발적 노력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은 남아공의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투투 주교나 넬슨 만델라와 같이, 흑인 인권을 대변하고 백인들에 의해 탄압받았던 인사들이었다.<sup>62)</sup> 특히 만델라는 그 자신이 백인 정권에 의해 억압받았던 사람으로서, 그가 전하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는 더 진실성을 가질 수 있었다.<sup>63)</sup> 이는 통일 과정에서도 희생자들에 의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노력이 먼저 시작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사 청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의 희생자로서 남북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열고, 건강한 사회로서의 통일 한국 발전에 대한 뜻을 모을 때 화해모델로서의 과거사 청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 4) 우분투를 통한 공동체 정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분투 정신은 고유의 지역적 공동체성을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제도화된 체계 속에 녹여낸 것으로서 이행기 정의 실

62) 전우택 외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pp. 62~64.

63)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공의 미래 건설을 위해 “나는 나의 적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 Donald Shriver, *An Ethic for Enemies: Forgiveness in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25~226;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p. 152에서 재인용.

현에서의 화해와 치유를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었다. 이는 통일 한국에서 새로운 사상을 통한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도록 한다. 분단 이전의 오랜 역사동안 한반도를 대표할만한 사상이나 의식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일 한국에서 새롭게 변용하여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분단과정과 이후 수십 년간 동안 남한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대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사상과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이는 모두 한반도 고유의 사상이 아닌, 서구로부터 유입, 이식된 것으로서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인 우위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어느 한쪽에는 익숙한 것이 다른 한쪽에는 매우 이질적이고 생경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과 북한 모두에 익숙하고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반도만의 특수하면서도 치유와 화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공동체 정신의 지향점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회적 논의와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의 홍익인간 사상이나 동학에서의 인내천 사상 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고유의 사상은 아니지만 조선 후기 한반도에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반도의 사상적, 정신적 특징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사회통합이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을 모두 아우르는 것을 지향했듯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공동체적 정체성과 사상의 범주가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의 일원으로서 점차 그 수가 확장되고 있는 다양한 인종, 국적의 구성원들까지 포함할 수 있는 보편성과 포괄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 5)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분열과 통합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 간 갈등이라는 점에서 같은 민족 간의 문제이자 사상과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인 한반도의 분단 트라우마와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남북 주민들 사이에는 한국전쟁 이후 개인적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교류가 부재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대립각을 세웠다는 점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갈등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해자들 중 상당수가 흑인이었다는 점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인종간의 문제만이 아닌 억압적 사회구조의 산물이며,<sup>64)</sup> 단순히 백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으로만 간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아파르트헤이트는 인종적, 민족적, 계층적, 사상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였다.<sup>65)</sup> 또한 아파르트헤이트 역시 냉전 시기라는 역사적 배경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냉전시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들은 공산주의가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를 총공격한다는 정치 선전에 빠져있었으며, 1990년대 초 공산주의권의 몰락과 함께 이러한 정치선전이 효력을 잃게 되면서 협상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었다.<sup>66)</sup>

물론 이런 사실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와 남북한의 경우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등치될 수는 없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 과거사 청산 과정 역시 사회적,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억압의 구조와 국제정세와 환경에 의해

64)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pp. 168~169.

65) Sang-Hyun Seo, "An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 after Unification," 『글로벌문화연구』, 제7권 2호 (2016), pp. 1~38.

66) "1991년~1992년 민주남아프리카공화국회의(CODESA)의 기록물 및 1993년 다당협상 기록물,"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mows/archives-of-the-codesaconvention-for-a-democratic-south-africa-1991-1992-and-archives-of-the-multi-party-negotiating-process-1993/>>.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다. 사회통합과 치유를 위한 노력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 갈등, 대립관계에 있는 집단 사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때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이는 남북한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정세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주도적으로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외교와 분단 극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변국들과의 우호적 관계형성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먼저 남한 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갈등 해결경험 축적을 통하여 성숙한 사회적 환경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통일 한국에서의 사회통합과 치유, 화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분단 트라우마의 치유와 화해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사적 차원에서 평화 구축의 수준을 한 단계 승화시키는 사건으로서 기록되도록 할 것이다.

## VII. 결론: 통일 한국의 과거사 청산 방향

한국에서의 과거사 청산은 해방 이후 구성된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반민특위)'를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고 행정,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서 경험이 있는 관료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친일 인사들이 다시 요직을 차지함에 따라 반민특위의 활동에는 제동이 걸렸고, 결국 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활동은 6개월 만에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sup>67)</sup> 그 밖에도 제주 4.3과 유신정권 하에서의 4.19,

67)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p. 267.

5.18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은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과거사 청산은 가해자 처벌 없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는 방식으로 제한적인 조치만이 취해지거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채 정권에 의해 탄압을 받거나, 역사 속에 묻혔다. 그러다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비로소 시작되었다. 2003년 국회 내 ‘과거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위원회’ 설치, 200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잊혀졌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포괄적 과거사 정리를 지향하며 그동안 개별적이고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사 청산과 차이를 보였고, ‘진실모델’과 함께 ‘화해모델’을 중요한 한 축으로 추구하였다.<sup>68)</sup> 이 시기 진행된 과거사 청산을 위한 노력들은 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과거사들을 다시 공론화하고 과거사 청산 작업 활성화를 위한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 진실모델과 함께 정의모델이 아닌 화해모델을 선택했다는 점은 역사를 기억하고 아파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공동체의 회복과 통합에 중점을 두겠다는 당시 정부의 의지의 발현으로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서도 여전히 다루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과거사 청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또, 과거사 청산 시도가 이후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한국에서 과거사 청산을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도 요원함을 보여준다.

한편 북한에서의 과거사 청산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분야인 인

<sup>68)</sup> 이영재,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 pp. 128~129.

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고 김정  
 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거론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정치적 견  
 해의 차이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다. 2016년에  
 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하여 북한인권재단 및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  
 립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통일 후 북한정권에 의해 진행된 인권침해 사  
 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위한 자료를 확보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7년 4월에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및 책임규명,  
 북한주민 인권 의식 향상, 북한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등 7개 과제가 제  
 시되었다.<sup>69)</sup> 이를 통해 동독에 대하여 서독의 중앙법무기록보관소가 가  
 졌던 것과 같은 예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  
 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통일 이전부터 북한의 과거사 청산을 위  
 해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시  
 도해보아야 한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이 이  
 루어질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한 인권상황 개  
 선을 촉진하면서 남한 내에서도 미진했던 과거사 청산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한국에서의 과거사 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  
 어져야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으로서, 독일  
 처럼 사법적 청산에 기반한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남아프리카공  
 화국에서처럼,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처럼 화해모델에 입각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둘 중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정답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sup>69)</sup> “통일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온라인), 2017년 4월 25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062843>>.

분명한 것은 지난 과거로부터 배울 필요가 있고, 그것은 과거사 청산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민족의 상처로 각인된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말하고, 들으며, 서로를 포용하고 아픔을 감싸주기보다는 낡은 벽장 속 숨겨진 이야기처럼 가둬두었고, 그것은 아픔을 배가시켰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개인들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이야기하기를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적 압력에 의한 측면이 더 많았다. 결국 이것은 분단체제로 인한 모순과 제약에 의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분단의 치유로서, 규명될 수 없었던 과거를 밝히고, 과거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공동의 미래를 세워가는 다리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통일을 위해서 사회치유와 올바른 과거사 청산 작업이 수반되어야 함도 자명하다.

그 과정에서 과거사 청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인가. 우리는 독일의 사례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사법적 청산을 강조하는 시각에서는 사법적 청산이 진실의 규명과 가해자의 인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가해자에 대한 분명한 처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화해의 프로세스에 기여한다고 본다. 반대로 화해와 사면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사법적 처벌은 사회통합을 위한 궁극적 방안이 될 수 없으며, 용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복원을 통해 손상된 것들을 복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과거사 청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두 가지 입장 모두 각자의 논리에 설득력이 있고,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이 '기억의 정치'이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미래를 지향해야하는 작업임을 고려할 때, 사법적 청산과 화해모델 중 어느 것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기보다는,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두 영역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sup>70)</sup> 단기적으로는 정의 실현을 위한

70) 통일 한국에서의 이행기 정의와 관련하여 사법적 처리, 진실과 화해위원회, 사

사법적 청산을 통하여 인류 보편 가치들을 침해한 책임자들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화해모델을 지향해야할 것이다. 화해모델을 통해 가해자들 역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치유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과거사 청산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간의 역사 가운데 성공적으로 과거사 청산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과거사 청산은 대부분의 경우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의하여 도구적으로 활용되어온 경향이 짙다. 그렇기에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은 남북한이지만,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과거 성찰로서의 과거사 청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 치유와 화해, 공동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는 국가적으로나, 국제사적으로나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일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남북이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 공동체로서 발돋움하며, 나아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통일은, 이 모든 과정의 핵심 열쇠로서, 굳게 닫혀있던 과거와 남북 간의 화해, 사회적 치유라는 민족적, 국가적 영역의 문과, 국제적으

---

면, 보상, 정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 중 어느 하나만으로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는 어려우며 국내, 국제적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병행되어야 한다. Buhmsuk Baek, Lisa Collins, and Yuri Kim, "Something to Consider: For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2호 (2015), pp. 99~130 참조; 유사하게 조정현(2014)도 한반도 통일에서의 과도기 정의 실현 방안으로서 형사처벌, 진실 규명, 피해자 구제, 기관개혁을 포함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정현,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 (2014), pp. 25~42.

로는 주변국과의 관계 회복과 상호 이해, 공존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접수: 2018년 10월 29일 / 심사: 2018년 12월 17일 / 게재 확정: 2018년 12월 17일

## 【참고문헌】

- 강남순. 『용서에 대하여』. 파주: 도서출판 동녘, 2017.
- 김광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 갈등과 화해 그리고 공존을 향한 “평화 개념” 맥락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한국아프리카학회지』, 제53권 (2018), pp. 3~43.
- 김동률·최성진. “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당위성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제66권 (2015), pp. 449~481.
- 김영수.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와 개혁적 사회통합.” 『국제지역연구』, 제12권 4호 (2009), pp. 67~88.
- 김지은.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 (2017), pp. 145~185.
- 김한균 외 공저. 『통일시대 형사정책과 형사사법통합 연구(II): 통일시대의 과거·불법청산 및 사회통합 방안의 연구』.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6.
- 모춘홍·정병화. “통일 이후 ‘과도기 이중체제’에 대한 소고(小考).” 『한양법학』, 제29권 1호 (2018), pp. 367~383.
- 백낙청. 『흔들리는 분단체제』. 서울: 창작과 비평, 1998.
- 손운산.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 안병직 외 공저. 『세계의 과거사 청산』. 서울: 푸른역사, 2005.
- 안종철. “남아공의 과거청산과 광주해법.” 『민주주의와 인권』, 제2권 1호 (2002), pp. 281~313.
- 엄찬호. “과거사 청산과 역사의 치유.” 『인문과학연구』, 제33권 (2012), pp. 263~290.
- 이병수. “분단 트라우마의 유형과 치유방향.” 『통일인문학』, 제52집 (2011). pp. 47~70.
- 이성우. “독일 통일 이후 과도기 정의 실현의 정치적 제약사항 검토.” 『국가전략』, 제22권 3호 (2016), pp. 139~171.
- 이수훈. “‘제2관’ 급변사태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4호 (2011), pp. 1~30.
- 이영재. “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 『정신문화연구』, 제38권 4호 (2015), pp. 121~152.

- 이재승. 『국가범죄』. 서울: 도서출판 엘피, 2010.
- 이진모. “독일의 ‘과거’와 한국의 현실 사이의 진지한 대화.” 『역사학보』, 제187권 (2005), pp. 271~291.
- 장공자. “북한의 강제수용소와 독일이 주는 교훈.” 『통일전략』, 제11권 1호 (2011), pp. 121~151.
- 장원석. “통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 일고.” 『정치와 평론』, 제14권 0호 (2014), pp. 89~119.
- 전우택. “통일은 치유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제54권 4호 (2015), pp. 353~359.
- 전우택 외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한반도 평화연구원, 2017.
- 전진성. “어떻게 부담스런 과거와 대면할 것인가? ‘과거극복’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독일연구』, 제9호 (2003), pp. 133~191.
- 조정현.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와 한반도 통일.” 『서울국제법연구』, 제21권 1호 (2014), pp. 25~42.
-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 제12호 (2015), pp. 26~49.
- 최승완 외 공저. 『독일통일 총서 7: 과거청산 관련분야』. 서울: 통일부, 2014.
- 홍준기. “폭력에 대한 정신분석적 성찰: 개인과 사회 속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식의 지평』, 제18호 (2015), pp. 83~103.
- J. Herman 저, 최현정 역. 『트라우마: 가정폭력부터 정치적 테러까지』. 서울: 플래닛. 2007.
- P. Hayner 저, 주혜경 역. 『국가폭력과 세계의 진실위원회』. 서울: 역사비평사. 2008.
- Kaminsky, Anna. “과거청산을 통한 통합.” 한독 국제회의. 『내적통합: 독일과 한국의 공동 도전과제』 한독국제회의 (2013년 5월 20일).
- Baek Buhmsuk, Lisa Collins, and Kim Yuri. “Something to Consider: For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국제법학회논총』, 제60권 2호 (2015), pp. 99~130.
- Beristain, Martin C., Paez, D., Rimé, B., and Kanyangara, P. “Psychosocial Effects of Participation in Rituals of Transitional Justice.” *Revista de PsicologSocial*, vol.



- 25, no. 1 (2010), pp. 47~60.
- Delury, John., Moon, Chung-in., and Terry, Sue Mi. "A Reunified Theory: Should We Welcom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Foreign Affairs*, vol. 93, no. 6 (November/December 2014), pp. 179~183.
- Dyzenhaus, David. "Debating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vol. 49, no. 3 (Summer, 1999), pp. 311~314.
- Gibson, James L. "Truth, Justice, and Reconciliation: Judging the Fairness of Amnesty in South Af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6, no. 3 (July 2002), pp. 540~556.
- \_\_\_\_\_. "Does Truth Lead to Reconciliation? Testing the Causal Assumptions of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Proces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8, no. 2 (April 2004), pp. 201~217.
- \_\_\_\_\_. "Overcoming Apartheid: Can Truth Reconcile a Divided Nati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603, no. 1 (January 2006), pp. 82~110.
- Goschler, Constantin.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Challenge of Transitional Justice," in Baek Buhm-Suk., Teitel, Ruti, G., ed. *Transitional Justice in Unified Kore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5. pp. 123~135.
- Lind, Jennifer. "The Perils of Apology: What Japan Shouldn't Learn From Germany." *Foreign Affairs*, vol. 88, no. 3 (May/June 2009), pp. 132~146.
- Llewelly, Jennifer J., and Howse, Robert. "Institutions for Restorative Justice: The South Afric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he University of Toronto Law Journal*, vol. 49, no. 3 (Summer 1999), pp. 355~388.
- Seo Sang-Hyun. "An Analysis of Social Integration of Korea after Unification." 『글로벌 문화연구』, 제7권 2호 (2016), pp. 1~38.
- Zehr, Howard. "Restorative Justice: The Concept." *Corrections Today*, vol. 59, no. 7 (December 1997), pp. 68~70.

#### 기타자료

"리하르트 슈뢰더 전 동독사민당 원내총무(현 한독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인터뷰,"

- 『아산정책연구원』(온라인). 2014년 10월 14일; <<https://goo.gl/Vw6vpn>>.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홈페이지,  
<[http://southafrica-embassy.or.kr/kr/aboutsa/overview\\_5\\_2.php](http://southafrica-embassy.or.kr/kr/aboutsa/overview_5_2.php)>.  
“진실과 화해위, 한 시대 마감하고 미래로 가는 길.” 『오마이뉴스』(온라인). 2004년  
9월 15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0089](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10089)>.  
“1991년~1992년 민주남아프리카공화국회의(CODESA)의 기록물 및 1993년 다당협  
상 기록물.” 유네스코 홈페이지. <<http://heritage.unesco.or.kr/mows/archives-of-the-codesaconvention-for-a-democratic-south-africa-1991-1992-and-archives-of-the-multi-party-negotiating-process-1993/>>. 유네스코 홈페이지  
“통일부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온라인). 2017년 4월 25일;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062843>>.

Korea Unification as Healing and Reconciliation from Division  
Trauma and Collaborative Future  
: Implications from the cases of Germany and South Africa's  
Liquidation of the Past

Kim, Ji eun (Yonsei University)

Abstract

Division has left inherited wounds and scars so-called 'Division Trauma' in Korean Peninsula.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from Division Trauma, 'Liquidation of the past' helps community to encounter unspoken past sufferings, truths and formate new memory, identity. In that process, healing from the Division Trauma, Liquidation of the past, and Korean Unification have organic relationship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proposing the role and direction of 'liquidation of the past in process of unification' for healing and reconciliation of division trauma. Germany and South Africa's cases and their implications are discussed for this purpose.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liquidation of the past in Korea unification are provided. Studies on liquidation of the past have mainly focused on juridical process, barely on integrative perspective which covers both juridical process and reconciliation model. Nor many studies have discussed liquidation of the past in terms of division trauma, social healing,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Thus,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integrative perspective, and considers liquidation of

the past in context of division trauma, social healing, reconciliation, and unification which differentiates this study from others.

Key words: Division Trauma, Social Trauma, Healing, Reconciliation, Liquidation of the past, Settlement from the past, Korea, Unification

김지은(Kim, Ji eun)

---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학사를, 동대학원에서 임상 및 상담심리로 석사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통일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남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통합, 정체성, 사회치유 및 화해, 이행기 정의(진실과 화해위원회, 과거사 청산), 통일 및 통합에서의 심리적 지원, 평화 연구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다중접속자 온라인게임(MMOG) 사용자의 게임중독에 대한 모형검증: 기질과 게임행동 및 게임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2012,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스토리텔링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치유 방향성 모색: 북아일랜드, 캄보디아, 독일,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2017, 『문화와 정치』 제4권 4호, pp. 145-185) 등이 있다.